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97호)

- '99. 9. 13.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9. 1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9. 9. 3
- 다. 상정일자 : '99. 9. 13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9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차 천 복)

가. 제안이유

- 다가오는 21세기의 본격적인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정비와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자리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 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경영행정 추구로 인력을 감축 관리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경쟁력 있고 생산성이 높은 구정을 지향하고자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 1,328명을 3년에 걸쳐 104명(집행기관 104)을 감축 조정함. (1,328→1,224명) (안 제2조)
- ①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함.(안 부칙 제2조)

「표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표

|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1,30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1명 |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

「표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표

|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1,267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5명 |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

(2)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① 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명(집행기관의 정원 2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명(집행기관의 정원 3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3명(집행기관의 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지방기구조정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서초구지방공무원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골자는

○ 정원감축

- 현재정원 1,328명을 1,224명으로 104명(집행기관 104)을 감축 조정함.
(안 제2조)

○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 정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안 제2조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현정원 보다 25명 감축된 「표1」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1」보다 36명 감축된 「표2」를 적용함.
(안 부칙 제2조)

※ 연도별 감축현황

| 구 분 | 현행 | 표1 (2000. 7.31까지) | 표2 (2001. 7.31까지) | 2001. 8. 1 이후 |
|--------|--------|----------------------|----------------------|---------------|
| 정원의 총수 | 1,328명 | 1,303명 | 1,267명 | 1,224명 |
| 감축인원 | | △25명 | △36명 | △43명 |

○ 정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 부칙 제2조 「표1」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명(집행기관의 정원 2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명(집행기관의 정원 3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31일)까지
-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3명(집행기관의 정원 43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안 부칙 제3조)

○ 직급별 정원에 따른 경과 조치

-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표1」, 「표2」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검토의견

- 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 서초구에서 서초구 총무 12200-2316('99. 8.21)호로 자치구 2단계 구조조정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조직 12200-654, '99. 8.30) 기구 및 정원 감축에 대한 조정안이 승인된 바 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원 조정안(1,2차) 내역

| 구분 | '98. 6 정원 | 1차 구조조정('98.10. 2) | | | 2차 구조조정('99. 9) | | | 감축누계 | |
|----|--------------|--------------------|----------|------|-----------------|----------|------|------|-------|
| | | 정원 | 감축 인원 | % | 정원 | 감축 인원 | % | 인원 | 비율 |
| 계 | 1,518명 | 1,328명 | 190명 | 12.5 | 1,224명 | 104명 | 6.85 | 294명 | 19.37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서초구의 현원과 제1·2차 감축계획 및 기준은?

답> 현원은 1,366명이고, 감축계획과 인원은 3개년도로 1차년도 25명, 2차년도 36명, 3차년도 43명으로 되어 있고, 감축기준은 감축대상을 선발할 때 다각적·다면적으로 사례를 수집하여 구청에서는 직원을 평가하는데 상사·동료의 평가, 누구와 근무하고 싶은지등 다면 평가실시와 불성실한자, 사생활 물란자, 음주, 근무시간내 주식에만 관심 있는자등 합리적으로 하겠음.

질> 제2차 구조조정의 감축대상중 정년퇴직, 자연적인 결원등 구조조정내역은?

답> 감축대상은 총 104명으로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이 3년동안에 54명, 인위적 감축이 50명으로, 금년도 감축대상 25명을 보면 일반직 9명, 기능직 7명, 고용직 9명으로 총 25명입니다.

질> 감축했을 때 현행대로 하면 1,328명이 실질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현원중 초과인원 38명은 언제까지 정·현원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또한 2001년 8월 1일 이후 43명은 시한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답> 정원 1,328명과 현원 1,366명의 차이 3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04명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음.

질> 감축인원 104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데 기본적인 우리구청의 각종 데이터를 참고하였는지, 그리고 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는지?

답> 이번에 감축하는 104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 2단계 구조조정 추가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우리구청의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구의 기본적인 변수인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결산액등 기타 자료에 의하여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시달된 것임.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